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2008.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신설(안 제3조의2)

나. 준용규정 일부변경(안 제5조)

3.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법(제 46조)

나. 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행정안전부)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2008.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8. 4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현행, 국내여비 정산제도는

일비와 식비는 정액제로 지급하고, 운임과 숙박비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이 대부분으로 실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를 사비(私費)로 사용후 사후정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당초 국내여비 지급제도의 개선취지를 살리면서 제도시행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

▷ 따로붙임